

2025년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자동차·석유화학 새출발 희망 지원금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공고

울산지역 고용둔화 업종(자동차 부품업종 및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의 신규 입직 유도 및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 희망 지원금>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7. 9.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새출발 희망 지원금
- 수행기관 :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 사업내용 : 신규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분의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지원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신규 근로자 및 기업
 - * (기업) 아래 필수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선택 항목 中 1가지 충족하여야 함
 - (필수 항목)
 - ① 울산광역시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 (선택 항목)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업종코드 및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석유화학업종

구분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
자동차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업종(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한정) * 협력사 확인 방법 :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서 확인된 협력사 또는 하도급계약서, SQ인증서 등 협력사업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기 업으로 함
석유화학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입사기준) 2025. 5. 1. 이후 신규 입사
 - (연령기준) 15세 이상
 - (임금/근로형태) 계약직, 정규직 등 제한 없으며 월 통상임금 500만원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신규 근로자 대상 100만원, 기업 대상 최대 120만원 지원
-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00만원 지원
 - (기업)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매월 최대 40만원씩 3개월 지원

II 신청자격

- 기업 : 아래 필수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선택 항목 中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함

필수항목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선택항목	<p>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업종코드 및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석유화학업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차업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업종(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한정) <p>* 협력사 확인 방법 :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서 확인된 협력사 또는 하도급계약서, SQ인증서 등 협력사업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기업으로 함</p> </td> </tr> <tr> <td>석유화학업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	자동차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업종(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한정) <p>* 협력사 확인 방법 :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서 확인된 협력사 또는 하도급계약서, SQ인증서 등 협력사업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기업으로 함</p>	석유화학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분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						
자동차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업종(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한정) <p>* 협력사 확인 방법 :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서 확인된 협력사 또는 하도급계약서, SQ인증서 등 협력사업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기업으로 함</p>						
석유화학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업종코드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국민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고용

① 사업장명은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 산재 고용

검색 현대중공업 (주)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업장명을 두글자 이상 입력하세요.

관할지역 울산지사 *관할지역은 필수선택 사항입니다.

○ 근로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5. 5. 1. 이후 자동차 · 석유화학업종 기업에 취업한 자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여 재직 중인 자
- 채용 당해연도 기준 15세 이상인 자
-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지원제외 대상자

- 채용일 기준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가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인력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단, 휴업 ·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 ·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III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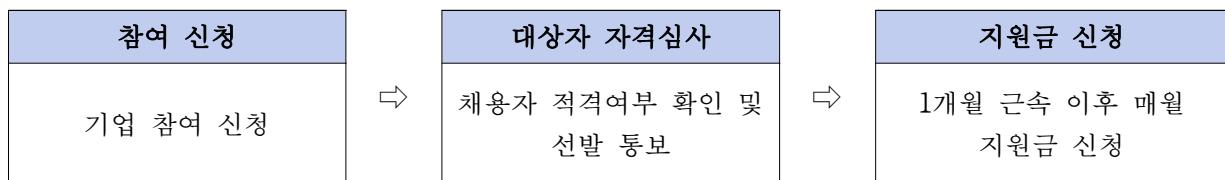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2025. 5.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근로자 대상 1개월, 참여기업 대상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은 대상자 채용 시기에 따라 3개월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비 소진 또는 사업 종료될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수준 : 지원 대상자 1인당 지원금은 신규 근로자 100만원, 기업은 월 최대 40만원×3개월(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지원함

IV 신청 및 문의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5.7.9.(수)부터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팩스 접수
-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uyef.or.kr) 또는 전화 문의
(이메일) uyea123@hanmail.net
(팩스) 052-277-9986
(문의전화) 자동차업종 : 052-277-9984, 052-707-9984
석유화학업종 : 052-273-1414, 052-277-9985

- 신청서류

- 기업 참여 신청 시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 ② 사업주 확인서 (서식 1-1)
- ③ 근로자 확인서 (서식 1-2)
-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 1-3)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1-4)
- ⑥ 고용문화 대응지원 사업 관련 안내(서식 1-5)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 ⑨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기업내역확인_사업장, 전체 가입자) 신청/발급 → 출력

⑩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용 사업장 카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 정보 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 → 화면인쇄

⑪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근로자 발급)

* 흠텍스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지원금 신청 시

① 사업주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2)

② 근로자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2-1)

* 근로자 지급 신청서는 1회차에 한함

③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④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지급 증빙자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 해당 월 검색 및 산출내역(개인별조회) 확인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및 근로자 선택하여 조회

⑤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차 신청 시에만 제출)

⑦ 국세 완납증명서(기업 발급)

* 흠텍스 → 증명 · 등록 · 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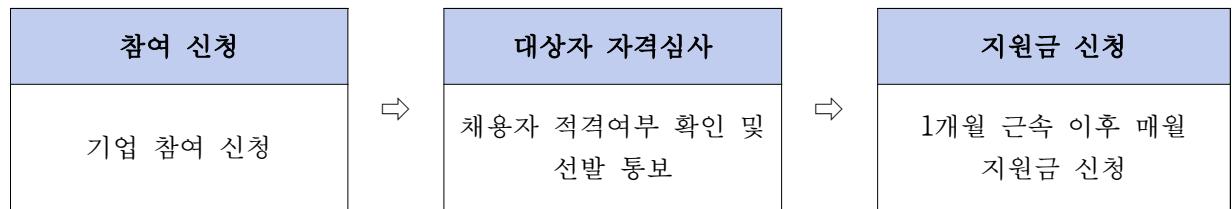
*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기업 발급)

* 국민건강보험 → 자주 찾는 서비스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증명발급 → 완납증명서

「새출발 희망 지원금」신청 서식

※ 새출발 희망 지원금 지급절차



■ [서식 1]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사업장 정보	소 사업장 속명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업 구분	지정업종	※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석유화학업 기업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30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input type="checkbox"/> 석유화학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9, 20, 22)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input type="checkbox"/> 예 (상시근로자 수 : 000명)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우선지원 대상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채용 현황	채용 인원 (2025. 5. 1. 이후)	명	근로계약 형태
	근무시간	월급여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1. 신청자 확인서(사업주 및 근로자용)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및 근로자용) 4.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6.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8.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관련 안내

■ [서식 1-1]

신청자 확인서 (참여 신청 시, 사업주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2.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대상 연령(15세 이상)이 아닌 자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 등에 취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이 형태로 재직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확인
③ 2025. 5. 1. 이후 채용,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월 통상임금 500만원 미만, 재택근로, 해외파견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확인
④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확인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확인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는 자	[] 확인
⑧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확인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공제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5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서식 1-2]

신청자 확인서 (참여 신청 시, 근로자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취업일 기준)

① 취업 당해연도 기준 15세 미만인 자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한 자 * 행복 일자리 플러스 지원금 지원 기간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변경될 경우, 변경 전월 까지만 지원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예 [] 아니오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장려금 참여 신청 이후에 타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 [] 아니오
⑥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예 [] 아니오
⑦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예 [] 아니오
⑧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등 (물량팀 포함)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예 [] 아니오
⑨ 사업장의 휴업, 본인 병가 등으로 근속 중단 한 사실이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⑩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예 [] 아니오
⑪ 동일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⑫ 기타 이 지침(공고)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예 [] 아니오

기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5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울산형 고용문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형 고용문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울산형 고용문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울산형 고용문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수행기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울산형 고용문화 대응지원 사업((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인적사항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성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주민번호)					
(연락처)					

2025년 월 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관련 안내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부정수급 사례》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인)

■ [서식 2]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울산양산경총 - 2025 -	접수일자
------	-----------------	------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0/3	

신청금액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됨	
지급 중단	장려금은 2025.12.20.까지 신청하여 2025.12.31.까지 지급 받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은 소멸되며, 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받음 <input type="checkbox"/> 확인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5인 이상기업 관련 증빙서류(취득자 목록 등) 3. 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법인의 경우 반드시 기업 명의 통장사본 제출 4. 퇴사자 상실목록 조회(퇴사자 발생시)			
------	---	--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임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서식 2-1]

『(자동차/석유화학업종) 새출발 희망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울산양산경총 - 2025 -	접수일자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정보	소 사 업 장 주 대 표 담 당 자	업 장 장 소 자 등 록 자 번 호 처	
-----------------	--	---	--

지원요건	취업일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2025년 월 일		
	주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월 급여	원
	근속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개월)	

신청인의 계좌번호 () 은행 _____ (예금주 :)

* 지원금 신청 시 지원 기간동안 아래의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원 기간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원금 지원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원금 지원기간 중 병가, 휴업 등을 실시하여 근속 기간이 단절된 사실 없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원금을 2025.12.20.까지 신청하여 2025.12.31.까지 지급 받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은 소멸되며, 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 받음	<input type="checkbox"/> 확인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또는 지급대상 기간 급여이체내역 일체)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